

장학규정

제정	1996.09.01	개정	2014.09.01
개정	2002.09.01	개정	2015.03.01
개정	2003.04.01	개정	2016.03.01
개정	2004.03.08	개정	2016.09.01
개정	2006.06.05	개정	2017.03.01
개정	2008.03.03	개정	2017.06.01
개정	2009.05.01	개정	2017.09.01
개정	2010.03.15	개정	2018.06.01
개정	2012.04.09	개정	2019.03.18
개정	2012.09.01	개정	2020.07.13
개정	2013.04.01	개정	2020.09.14
개정	2013.09.01	개정	2022.05.23
개정	2014.04.01	개정	2023.04.03
개정	2024.11.04	개정	2025.0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50조에 따라 학생의 면학을 고취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생의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장학생 선발과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각 장학단체·개인 등이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학위원회의 구성) ① 장학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

② 장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업무소관부서장이 하고, 위원은 스쿨원장이 추천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

나. 장학위원회에 관한 제반업무는 본부장학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제4조(장학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장학금 지급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장학생 선정, 장학금 지급과 그 중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기타 장학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장학금의 구분) 장학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내장학금: 대학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2. 교외장학금: 정부지원금 또는 기관(재단), 산업체 및 개인 등의 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제6조(장학금의 종류) ① 교내장학금의 종류 및 지급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의 등록금 감면을 목적으로 하는 장학금은 희망장학금, 학습지지장학금, 비전 장학금과 같다.

제7조(장학생의 자격)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업료를 납부하고 장학생 선발일자에 재학 중인 자(단, 학기 3/4선 군휴학자 중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는 학생은 예외로 인정한다.)
2. 직전학기 이수학점 취득기준

구분	취득 학점
전문학사	15학점 이상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8학점 이상
학점 인정을 받은 신입, 편입, 만학도 재학생	10학점 이상
전문학사 졸업 연한 초과자	15학점 이상 취득하고 현재학기 10학점 이상 수강신청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졸업 연한 초과자	8학점 이상 취득하고 현재학기 8학점 이상 수강신청

3. 삭제
4. 해당학기에 징계사실이 없는 자(또는 징계사실이 있는 경우 징계말소 처리가 완료된 자)
5. 삭제
6. 천재지변, 감염증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총장이 따로 정하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스쿨(학과)장학금의 배정 및 선발기준) 삭제

제9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① 교내장학금 대상자의 추천 및 선발은 별표1과 같이 정해진 경우 본 부장학담당부서에서 선발하며, 이외의 교내 장학금은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한다. (단, 별표1과 같이 정해진 경우라도 변경이 필요할 때는 장학위원회 심의 및 총장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② 교내 장학금별 신청 인원이 장학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1순위 소득구간(저소득층), 2순위 직전학기(신입생 1학년 1학기는 입학학기) 백분위 점수, 3순위 다학점 취득자'순으로 선발한다.
- ③ 교외장학금 대상자의 추천 및 선발은 지원기관의 규정과 기탁자의 요구를 제외하고는 장학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선발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장학금은 월별로 지급한다.
2. 삭제
3. 장학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당해 연도 가용 재원에 따라 장학종류와 장학금액을 해당 장학위원회 심의 후 총장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
4. 수업료에 해당하는 장학금 중 성적우수장학금, 보훈장학금 디딤돌장학금을 제외하고는 국가장학금을 우선 지급하며, 국가장학금 수혜자가 교내(외) 장학금과 중복수혜일 경우 차액 장학금은 해당 장학금의 선발순위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장학금 수혜기간)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학기에 한한다. 단,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장학금 이중 수혜 금지) 삭제

제13조(장학금 지급의 중지 및 취소)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다음 각호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

지 또는 취소한다.

1. 제적자 및 미등록 휴학자
2. 학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3. 학업성적이나 태도가 불량한 자

제14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심의 및 상위 관련법령 기준에 따른다.

부 칙

-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 규정은 199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03년 09월 08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04년 03월 08일부터 시행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5. 이 규정은 2014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6.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7. 이 규정은 2016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8. 이 규정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9. 이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0. 이 규정은 2017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이 규정은 2006년 06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p>(경과조치) '제7조(장학생의 자격) 3. 전공심화과정생의 경우는 해당학기에 8학점 이상, 졸업연한 초과자의 경우는 해당학기에 10학점 이상 신청한 자'의 규정은 2017년 03월 0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이 규정은 2008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09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1.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2. 이 규정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3. 이 규정은 2019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9. 이 규정은 2010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p>(경과조치) '제6조(장학생의 종류), 제7조(장학생의 자격), 제10조(장학금의 지급)'의 규정은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p>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이 규정은 2012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규정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규정은 2013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3. 이 규정은 2013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4. 이 규정은 2014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9. 이 규정은 202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ol style="list-style-type: none"> 24. 이 규정은 2020년 0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5. 이 규정은 2020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26. 이 규정은 2022년 0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7. 이 규정은 2023년 0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8. 이 규정은 2024년 11월 07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장학금 종류 및 지급내용

구분	장학금명	지급대상자	장학금	장학금 성격
창의문화 장학금	창의자연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자 중 학생활동(동아리활동+현장실습+자격증 등) 2개 이상 증빙과 스쿨원장이 추천	전액	수업료
	창의인간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자 중 교내외 재능기부자를 스쿨원장이 추천	전액	수업료
	창의문화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자 중 창의활동(지식재산권 취득+외부수상+창업) 1개 이상 증빙과 스쿨원장이 추천	전액	수업료
	청강책깡장학금	- 도서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행사) 참여자 중 도서관장이 추천	별도산정	학업장려비
자기주도 장학금	자기개발장학금	- ¹⁾ 외국어, 자격증, 공모전, 예술활동증명, 지식재산권 등 증빙 제출자 (자격기준표 참조) - 학기별 기간, 공통기준, 취득일 기준 등 세부일정은 해당학기 별도 장학 공지 내용을 따름	별도산정	수업료
	청강주도장학금	- 대학/스쿨 발전에 이바지한 재학생 중 부서장이 추천	100만원	수업료
	청강장학금	- 성적우수장학생 중 학년별 1등 (성적동점자는 취득학점, 소득분위 순으로 선발)	50만원	학업장려비
		- 신입생우수장학생 중 전체 입학성적 1등 (입학성적 동점자는 취득학점, 평균평점, 소득분위 순으로 선발)	100만원	학업장려비
	성적우수장학금	- 직전 학기 과락(F, NP) 없이 15학점(학사 8학점) 이상 취득하고, 등급제 과목이 최소 수강신청 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칙 제43조(교과 이수단위) ②항> - 전공, 학년별 평균평점이 3.5 이상자 중 1등 학생을 선발 함	전액	수업료
		- 직전 학기 과락(F, NP) 없이 15학점(학사 8학점) 이상 취득하고, 등급제 과목이 최소 수강신청 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칙 제43조(교과 이수단위) ②항> - 전공, 학년별 평균평점이 3.5 이상자 중 대상인원 20%이내에 속하는 학생을 선발 함 - 가용 장학금 예산에 따라 대상인원 비율은 달리 적용한다.	수업료의 20%	수업료
	신입생우수장학금	- 전공별 입학성적 1등 (입학 학기 평점 3.5 이상자는 2학기까지 지급, 전공기준 추가적용)	전액	수업료
		- 전공별 모집정원의 4% 이내에 속하는 자 (소수점 절상, 전공기준 추가적용)	150만원	수업료
	성적향상장학금	- 직전 학기 및 해당학기 과락(F, NP) 없이 15학점(학사 8학점) 이상 취득하고, 등급제 과목이 최소 수강신청 학점이상 포함되어야 함 <학칙 제43조(교과 이수단위) ②항> - 직전 학기 대비 평균평점이 1.0 이상 상승한 학생을 선발함	50만원	수업료
	학습활동장학금	- 비교과프로그램 2개 이상 이수 학생 중 해당학기 장학 공지 절차를 준수한 자(교양교육원 제외)	30만원	학업장려비
		- 학습부진자 중 지도교수 상담 및 학습법 비교과프로그램 참여 후 지도교수가 추천	50만원	학업장려비
	학습지지장학금	- 학습유지가 어려운 재학생 중 스쿨원장 및 부서장의 추천	200만원 이하 별도 산정	학업장려비
	비전장학금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로 스쿨특성에 적합한 장학금지급계획서를 장학담당부서 제출 후 스쿨원장 추천	별도산정	수업료
소통협력 장학금	교양역량장학금	- 교양교육원 활동(교과, 비교과, 홍보 등)에 적극 참여한 재학생 중 교양교육원장이 추천	50만원	학업장려비
	청강가족장학금	- 형제자매 중 재학생 (형제자매 3명 이상 중 1명은 전액)	100만원	수업료
		- 교직원(법인 포함) 중 직계자녀와 배우자	전액	수업료
	봉사장학금	- 학생자치기구 ²⁾ 의 선출 및 임명된 재학생 (자격기준표 참조)	별도산정	학업장려비
		- 한국장학재단 장애학생 도우미 기준적용	50만원	수업료
		- 교외 봉사활동 40시간 이상자	50만원	학업장려비
	희망장학금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된 소득분위 3구간 이내 재학생 (재단 미확인자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전액	수업료
		-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된 소득분위 4구간 ~ 9구간 이내 재학생	별도산정	수업료

	- 가용 장학금 예산에 따라 대상인원 비율은 달리 적용한다.		
동행장학금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장애 재학생 중 중증 장애인	전액	수업료
	- 장애인(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장애 재학생 중 경증 장애인	수업료*30%	수업료
다문화가정장학금	- 다문화가족지원법 상 다문화가정 재학생 중 소득분위 3분위 이하	500,000원	수업료
보훈장학금	- 국가보훈대상자와 자녀	전액	수업료
디딤돌장학금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 재학생	전액	수업료
외국학생장학금	- 외국 국적 재학생	수업료*20%	수업료
글로벌장학금	- 외국 국적 재학생 중 TOPIK II 3급 이상 보유자(외국학생장학금과 중복수혜 할 수 없음)	수업료*30%	수업료
학사학위과정장학금	- 학사학위과정 재학생 전원	수업료*20%	수업료
총장특별장학금	- 총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장학위원회 의결 후 장학생 선발	별도산정	학업장려비
근로장학금	- 교내외 근로 재학생	최저시급	학업장려비

1) 자기개발장학금 지급기준

구분	대상기준	장학금	비고
외국어	TOEIC IH, 750 / TEPS 3+ / JPT 750 / JLPT N2/ HSK 5급 / OPIc IH	50만원	해당 학기 취득자 혹은 장학금 미신청 취득자 (단, 공지 일정에 따라 해당 학기 기간 상이)
	TOEIC IM2, 550~749 / TEPS 4+ / JPT 550~749 / JLPT N4~N3/ HSK 3급~4급 / OPIc IM2	30만원	
자격증	국가자격증 산업기사 이상	30만원	
	국가자격증 기능사	20만원	
	민간자격증, 국제자격증	15만원	단순 입상과 스쿨 주제는 제외
공모전	국외공모전 수상	100만원	
	국내공모전 수상	50만원	
예술활동증명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제출	30만원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제출에 한해서 지원(예술활동증명 단순 신청만으로는 장학금 신청 불가)
지식재산권	특허, 상표, 실용신안, 저작권	30만원	

※ 해당학기 기준 취득자를 원칙으로 선발하며, 관련세부기준 및 제출서류는 본부장학담당부서 따로 정한다.

2) 학생자치기구 자격기준표

구분	대상자	장학금	비고
총학생회	회장	수업료 전액	자체평가 후 차등 지급
	부회장	수업료의 70%	
대의원회 등	학생회칙 제5조(학생자치기구)에 명시한 기구 활동 참여자	별도산정	
스쿨학생회	회장 / 부회장	100만원 / 70만원	
	간부	별도산정	
스쿨졸업준비위원회	위원장 / 부위원장	100만원 / 70만원	
	간부	별도산정	

[별표 3] 교외장학금 추천서

()학년도 ()학기 ()장학금 추천서

성명		생년월일	
스쿨(전공)		학번	
직전학기 성 적		연락처(H.P)	
주소			

위 학생은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인)

[별표 4] 장학금 기부서

기부자 구분		개인	()	단체	(○)
--------	--	----	----------------	----	-------------

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단체	단체명			단체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일반전화
e-mail					휴대전화
장학금 성격		☐ 수업료 ☐ 학업장려비(생활비)			
장학금 기부금액					
장학금 기부목적					
장학금 기부계좌		230137-04-003312, 국민은행,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장학금 수혜자 지정	예 ()	전공명			이름
		학번			
	아니오()	기부장학금을 기부목적에 부합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것을 귀 대학 위임합니다.			

※ 단체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 필히 첨부

※ 수혜자 지정 학생이 다수일 경우 명단 붙임

상기 내용으로 귀 대학에 장학금을 기부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단체)

(서명/직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

장학금 수혜자 지정 명단

연번	학과	학번	이름	장학금액(원)	은행/계좌번호
합계				0	

※ 명단 표에 공백 라인 발생시 “- 이 하 여 백 -”을 명기하시기 바랍니다.

위 학생들을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기부자(단체) : (인)